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66
----------	-------

발의연월일 : 2019. 4. 17.

발의자 : 김현권 · 윤호중 · 안호영

김철민 · 민홍철 · 서삼석

오영훈 · 김병기 · 서형수

신동근 · 윤준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또한 불법·비보호·비규제어업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양어업자 등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더불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불법·비보호·비규제 어업의 근절을 위해 어업의 투명성 확대를 강조하고 실행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의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29조에 따른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검을 받은 경우

14.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경우

제1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극물,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없이 조업하거나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여 면허,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에 또는 연안국에 불법·비보고·비

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5.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금지 수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 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감금하는 행위
9. 조업상황·양륙·전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10.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조사·선박의 검색 및 통신 등의 임무수행을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훼손하는 행위
11.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표시, 표지 및 등록된 사항을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12.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3.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혐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4. 선박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선박위치추적

장치를 조작·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15.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6.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17.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어업허가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8. 그 밖에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는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위

제19조제1항 중 “지원하기”를 “지원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4절(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제29조(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

는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양어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제출 절차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안전관리책임자)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해사안전감독관) ① 「해사안전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항의 정지
2.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

③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검사 및 조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에 출입할 수 있고 해당 원양어업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이하 “수산물 가액”이라 한다)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

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5억원으로 하고, 하한액을 1억원으로 하며, 5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고 원양어업을 한 자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3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3억원으로 하고, 하한액을 5천만원으로 하며, 5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1.5를 곱한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수산물 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1억 원으로 하고, 하한액을 1천만원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와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

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을 "수산물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을 "수산물 가액"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자

제33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검을 받은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12.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① ----- ----- ----- ----- ----- ----- -----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제29조에 따른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검을 받은 경우</u></p>
<p><u>&lt;신 설&gt;</u></p>	<p><u>14.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경우</u></p>
<p>제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p> <p>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p>	<p>제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p>

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국 또는 해당 연안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국제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어획량 및 세부 기록(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어획량을 거짓 보고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금지수역에서의 조업, 금어기 중의 조업 및 설정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4.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조업이 금지된 자원에 대하여 직접 조업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어선의 표시, 표지 및 등록된

-----  
-----  
-----  
--.

1. 독극물,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없이 조업하거나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여 면허,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에 또는 연안국에 불법·비보호·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5.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금지 수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

내용을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7. 승선 검색과 관련된 증거의 은폐, 훼손 및 제거 행위
8. 국제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보존관리조치의 위반행위
9. 국제수산기구의 불법·비보호·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10. 옵서버의 이동, 승선·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 검색관의 승선·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거나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감금하는 행위
9. 조업상황·양륙·전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10.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조사·선박의 검색 및 통신 등의 임무수행을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훼손하는 행위
11.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표시, 표지 및 등록된 사항을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12.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3. 불법·비보고·비규제업 협

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4. 선박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

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선박위  
치추적장치를 조작·변경하거  
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15.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되

는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  
를 위반하는 행위

16.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된

어획 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  
하는 행위

17.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어업

허가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8. 그 밖에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는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  
하는 행위

(③) ~ (⑩) (생 략)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의 구축) ① -----  
-----지원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신 설>

제29조(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작성 및 제출 등  
의 업무를 「해사안전법」 제51  
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원양어업자는 그 사실을 10  
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제출 절  
차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제29조의2(안전 관리 책임자) ① 원  
양어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의 수  
립·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  
항을 위하여 안전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관리 책임  
자의 자격기준·인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3(해사안전감독관) ①

「해사안전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항의 정지

2.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

③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검사 및 조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에 출입할 수 있고

해당 원양어업자는 해사안전감  
독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① 해양  
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  
額)(이하 “수산물 가액”이라 한  
다)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  
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  
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  
란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로 얻  
은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  
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5억원으로  
하고, 하한액을 1억원으로 하  
며, 5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  
로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서는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고 원양어업을 한 자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3억 원으로 하고, 하한액을 5천만원으로 하

며, 5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수산물 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1억원으로 하고, 하한액을 1천만원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  
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감안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  
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원  
양어선의 안전관리와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  
절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신 설>

-----  
-----  
----.

< 삭제 >

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검을 받은  
자